

의안 번호	1552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5. 8.(수)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9. 5. 8.(수)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9. 5. 21.(화)

2. 제안설명 요지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규정 변경(안 제5조)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개정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 변경(5천원 미만→1만원 미만)

다. 근거법규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유경달)

- 본 조례안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의 산정 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 안 제5조 점용료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일부 개정하였음.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큰 거 법 규

「도로법 시행령」

-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